■ 민족문화연구 제88호(2020.08.3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147-172.
http://doi.org/10.17948/kcs.2020..88.147

역사학의 관점에서 본 16세기 유연 사건

권내현(權乃鉉)*

목 차

1. 머리말
2. 사건의 개요와 자료
3. 가계 계승과 상속 갈등
4. 정치 세력 변동과 재판
5. 맺음말

국문초록

16세기 조선 사회의 상속은 자녀 간 균분 상속의 관행을 유지하면서도 가계 계승자의 몫을 점차 늘려나가는 과정이었다. 균분 상속은 결혼을 통한 경제력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양반 남성들 가운데에는 상속 재산을 두고 처가와 갈등을 일으키는 이들이 있었다. 한 집안 내부에서 가계 계승을 둘러싸고 갈등이 일어나는 일도 있었는데, 이 역시 상속과 연관된 경우가 많았다. 유연 사건은 그러한 갈등 양상을 흥미롭게 보여준다. 이 사건을 주로 다룬 국문학계의 연구는 16세기 사회상이나 역사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유연전」 이외의 자료에 대한 분석이나 인물들 사이의 상호 관계에 관한 탐구도 부족하였다. 16세기에 종법은 아직 완전하게 정착하지 않아 장남이 자식 없이 사망하면 장남의 부인(총부)과 차남 사이에서 가계 계승 및 상속을 둘러싸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유연 사건도 이러한 갈등을 내포

* 고려대 역사교육과 교수.

하고 있었다. 또한 이 시기에 정치적으로는 사림의 전면적 등장이라는 권력 구조의 변화가 나타났다. 유연 사건을 두고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린 두 차례의 재판이 열린 것은 이러한 정치 변동과도 연관이 있었다.

주제어: 유연, 상속, 장자, 종법, 외척, 사림.

1. 머리말

16세기 대구에 살던 양반 柳游의 가출과 동생 柳淵, 자형 李禔의 재판으로 이어지는 상속을 둘러싼 갈등은 李恒福의 「柳淵傳」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유연전」에 대해서는 법사학의 측면에서 간략한 소개가 있었지만[1] 대부분의 연구는 국문학계에서 이루어졌다. 국문학계에서는 「유연전」을 기본적으로 소설로 간주하고 그 문학적 특징이나 작품에 반영된 사회상 혹은 인물상 탐구에 주력하였다.[2]

유연 사건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고, 당대는 물론 후대의 많은 사람에게 주목을 받았다. 이항복이 이 사건을 흥미롭게 서술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관이나 소설적 요소를 첨가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유연전」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실존했던 이들이며, 줄거리도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유연전」에서 사실과 오류, 혹은 창작을 엄밀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이 사건은 사회사나 정치사적 관점에서 음미해볼 부분이 많다.

유연 사건을 언급한 자료들도 비교적 많이 남아 있다. 기존 연구가 「유연

1) 鄭肯植, 「〈柳淵傳〉에 나타난 相續과 그 葛藤」, 『법사학연구』 제21호, 한국법사학회, 2000a; 「〈柳淵傳〉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16세기 형사절차의 일례—」, 『又凡李壽成先生華甲紀念論文集』, 동논문집간행위원회, 2000b.

2) 이수봉, 「유연전 연구」, 『호서문화연구』 제3집,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1983; 노꽃분이, 「「柳淵傳」의 구성적 특징과 서술의식」, 『한국고전연구』 제1집, 한국고전연구학회, 1995; 정인혁, 「「유연전」의 시점과 플롯 연구」, 『어문연구』 제30권 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2; 정충권, 「「유연전」과 「화산중봉기」 비교 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제11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6; 조도현, 「「柳淵傳」의 文學的 特性과 그 意味」, 『인문학연구』 제34권 1호,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07; 김진영, 「「유연전」에 나타난 조선 중기의 사회변화와 지향의식」, 『어문연구』 제84집, 어문연구학회, 2015; 백지민, 「17세기 전계소설의 창작 동인과 서사전략—「유연전」과 「강로전」을 대상으로」, 『한국고전연구』 제34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6.

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만 이지의 입장을 대변하는 權得己의 「李生訟冤錄」은 「유연전」에 없는 새로운 사실들을 제공한다.[3] 또한, 유연의 집안과 교류했던 李文楗의 『默齋日記』를 비롯하여 관련 인물들의 문집, 후대의 기록과 16세기에 작성된 분재기들도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4]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이 연구에서는 상속 갈등과 관련 인물들 사이의 연관 관계, 재판의 정치적 의미에 대해 천착해 보고자 한다. 상속을 둘러싼 가족 갈등은 「유연전」을 다룬 기존 연구에서도 많이 언급되었지만, 자녀균분상속에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던 16세기 사회상과 유연 사건을 객관적으로 연결하여 분석하지는 못했다. 이 사건을 두고 두 차례 이루어진 재판의 판결 내용이 완전하게 바뀐 것 역시 16세기 정치세력의 변화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 또한 이해하지 못하였다.

유연 사건과 그와 관련된 자료는 주로 분재기나 소송 문서에 집중된 역사학계의 상속 연구를 확장하는 한편으로 재판에 영향을 준 정치 주체와 그들의 인적 관계를 살펴보는 데 도움을 준다. 더불어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국문학계의 「유연전」이나 「이생송원록」 연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당대의 제도와 관습, 현실, 인적 연결 고리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유연 사건을 객관적으로 이해해 보고자 하였다.

2. 사건의 개요와 자료

1556년(명종 11) 대구의 한 양반가에서 柳游란 인물이 가출하였다. 그에게는 백씨 성을 가진 부인이 있었고, 현감을 지낸 아버지 柳禮源 역시 생존해

3) 김영연, 「「이생송원록」을 통해 본 「유연전」과 유연 옥사 담론」, 『국문학연구』 제38호, 국문학회, 2018에서는 「유연전」과 「이생송원록」의 경합 과정에서 「유연전」의 담론이 채택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4) 16세기 분재기를 통해 상속 양상을 살펴본 연구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鄭肯植, 「16세기 財産相續과 祭祀承繼의 실태」, 『고문서연구』 제24호, 한국고문서학회, 2004; 한효정, 「16세기 한 양반가 부인의 재산축적과 소유의식—慶州孫氏家門 和順崔氏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제36호, 한국고문서학회, 2010; 정수환, 「16세기 영해 무안박씨의 매매와 분재를 통한 가계경영 전략」, 『인문학연구』 제27집, 제주대 인문과학연구소, 2019 등.

있었다. 형제로는 형인 治와 아우 淵이 있었는데, 치는 이미 죽어 유유가 사실상의 장남이었다.[5] 이 외에 종친인 達城令 李禔, 대구의 사족 崔守寅[6], 진주의 사족 河沆과 각각 혼인한 세 명의 누이가 더 있었다.

유유의 가출에 대해 아버지와 아내는 미치광이 병을 앓아서라 했고 동생 연은 가족 간의 불화를 원인으로 보았다. 국가의 공식 기록인 『明宗實錄』에는 유유가 心疾, 즉 마음의 병을 앓고 있었다고 하였다.[7] 유유의 증상은 자신은 물론 가족 구성원들에게 고통을 주거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었다. 특히 상속과 같은 이권이 달린 문제나 상장례, 제례와 같은 의례의 시행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심각했다.

1561년 병을 앓던 아버지 유예원이 사망하였다. 그의 상장례는 셋째 유연에 의해 진행되었다.[8] 다음 해 뜻밖에도 유유가 해주에서 채응규란 이름으로 살고 있다는 자형 이지의 편지가 유연에게 전달되었다. 당시의 국왕 명종은 어릴 때 이지의 집에서 지낸 적이 있어서 그를 공신에 포함하고 파격적으로 대우하였다.[9] 달성령 이지는 세종의 아들 翼峴君의 증손자이자 花山君의 서자였다. 그는 규정에 따라 정5품에 해당하는 令의 종친 작위를 받았으나 명종의 배려로 정3품 都正에 오르기도 했다.

이지의 편지에 따라 유연은 노비들을 보내 형의 진위를 파악하려 했으나 명확하지 않았다. 1563년 겨울 채응규는 첩 춘수와 아들 정백을 데리고 서울에 나타나 이지와 沈鏜 등의 친인척을 만났다. 그들은 얼굴 형상은 달라졌으나 과거에 대한 기억이 정확하다며 채응규를 유유라고 인정하였다. 다음 해 1월, 유연이 대구에서 서울로 왔으나 채응규의 진위를 가리지 못한 채 그와 함께 대구로 내려갔다.

유연은 고향으로 가는 길에 채응규를 가짜라고 확신하고 그를 묶어 대구

---

5) 「이생송원록」에서는 유연의 형제를 치, 유, 연, 사 등 모두 네 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사(泗)는 「유연전」에 등장하지 않고 족보에도 실리지 않아 성인이 되기 전에 죽은 것으로 보인다.

6) 족보에는 최수인이 아닌 崔寅秀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당대의 기록인 「유연전」과 「이생송원록」에 따라 최수인으로 표기하였다.

7) 『明宗實錄』 권30 명종 19년 3월 20일(임술).

8) 李文楗, 『默齋日記』 9책 嘉靖 40년(1561) 9월 11일.

9) 『明宗實錄』 권3 명종 1년 2월 14일(신축).

관아로 넘겼다.[10] 채응규의 진위를 둘러싼 친족과 친구들의 견해는 일치하지 않았는데, 결혼 첫날밤의 비밀스러운 일에 대한 채응규의 진술을 백씨가 인정하면서 유연은 궁지에 몰렸다.[11] 그 사이 병으로 保放된 채응규가 돌연 사라지자 유연은 재산 때문에 형을 죽인 것으로 의심받게 되었다. 이러한 의심은 춘수와 백씨에 의해 증폭되었다.

결국 유연은 형을 살해한 강상죄인으로 몰려 서울로 압송되었다. 강상죄는 의금부 외에 의정부와 사헌부가 합동으로 처리하는 三省推鞫의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당시 신문을 책임진 委官은 명종의 외척이자 우의정이었던 沈通源이었다. 거듭된 신문과 고문으로 유연의 노비 중에서 유연의 죄를 인정한 이가 나왔고, 유연 역시 형장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를 시인하였다. 그 결과 1564년(명종 19) 유연은 형을 죽인 강상죄인으로 능지처참 되었다.

하지만 이는 명확한 증거 없이 진술에만 의존한 처분이었다. 채응규의 진위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유유의 시체도 확인하지 못했지만, 오로지 고문을 동반한 진술만으로 유연을 처형한 것이다. 따라서 관료 중에는 당시 재판의 정당성에 의문을 가진 이들이 있었다. 1571년(선조 4) 사헌부 장령이었던 鄭淹도 유연 사건의 재조사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2]

그런데 尹國馨은 일찍이 평안도 순안의 한 산사에서 天裕勇으로 이름을 바꾼 유유를 만난 적이 있었다. 그는 급제 이후 1579년에 홍문관 수찬의 관직에 있으면서 국왕 선조에게 자신의 목격담과 유유의 생존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선조는 사헌부를 통해 천유용을 압송해 오도록 했는데, 조사 끝에 실제 유유임이 확인되었다.[13] 그가 채응규란 이름으로 서울과 대구에 나타난 사실도 없었다.

사헌부에서는 다시 해주에 머물러 있던 채응규와 춘수를 체포하였다. 채응규는 압송되어 오는 길에 자결했고 춘수는 신문 과정에서 이지와 채응규가 재

10) 「유연전」을 보면 유유는 다음의 세 가지 때문에 채응규가 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첫째, 유유는 원래 몸이 허약하고 작았으나 채응규는 키가 크고 체구도 컸다. 둘째, 유유는 얼굴이 작고 누르스름하며 수염이 없었으나 채응규는 검붉고 넓은 얼굴에 수염이 많았다. 셋째, 유유는 음성이 여성 같았으나 채응규는 우렁찼다.

11) 『明宗實錄』 권30 명종 19년 3월 20일(임술).

12) 柳重教, 「通政大夫承政院同副承旨贈嘉善大夫司憲府大司憲鄭公墓誌銘並序」, 『省齋集』 권41 柯下散筆.

13) 『宣祖實錄』 권14 선조 13년 윤4월 10일(무신).

산을 노리고 일을 꾸몄다고 자백하였다. 1580년(선조 13) 이지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다 계속된 신문과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을 맞았다.[14] 당시의 재판은 춘수의 진술을 인정하여 이지를 주범으로 보았다. 춘수도 공모 혐의로 교수형에 처해졌으며, 유유에게는 아버지의 장례에 참석하지 않았고 동생의 죽음에도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장 백에 도 삼 년 형이 내려졌다.

1564년 유연의 재판과 죽음 이후 16년 만에 이지의 혐의가 밝혀짐에 따라 이 사건은 종결되었다. 유연은 이지, 채응규의 계략과 춘수, 백씨의 무고에 의한 희생자였다. 유연의 부인 이씨는 친정인 서울에 머물며 남편의 억울함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녀는 이웃에 거주하던 李元翼에게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이원익은 다시 이를 李恒福에게 알려 1607년(선조 40)에 「유연전」이 완성되었다.

유연의 입장에서 기록된 「유연전」은 현재 이 사건 연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저자 이항복과 유연 사이의 직접적인 교류는 없었다. 다만 이항복의 장인 권율은 젊을 때 유연을 몇 차례 만난 적이 있었고 사건 이후 유연의 부인 이씨의 처신을 높이 평가하였다.[15] 유연과 권율, 권율과 이항복, 이항복과 이원익, 이원익과 이씨가 서로 연관되어 있었던 것이다.[16] 이항복은 이러한 인연과 사건의 실상에 따라 철저하게 유연의 입장에서 「유연전」을 저술하였다.

유연의 부인 이씨와 마찬가지로 이지의 아들들도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었다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지의 아들 이언관은 이항복에게 요구하여 「유연전」의 後敍를 받아냈다. 이 내용은 현전하지 않는데, 「유연전」에 비해 다소 모호한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언관은 金時讓을 찾아가 이 후서와 집안 문서를 보여주며 아버지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김시양은 후서

14) 『宣祖實錄』 권14 선조 13년 윤4월 10일(무신).

15) 「유연전」 말미에 權聘君이 일찍이 "젊었을 때 姻席에서 유연을 여러 번 만났는데 키는 작지만 날쌔고 용감하였으며 강개하고 명성을 좋아하였다. 화를 입은 뒤에 아내가 능히 머리 빗질이나 얼굴을 다듬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해 빌면서 흰머리가 되도록 변함이 없었으니 참화에 잘 대처하였다고 할만하다."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온다. 여기서 권빙군은 이항복의 장인 권율을 말한다.

16) 본문에서 언급한 대로 유연과 권율의 교류는 「유연전」에 나오며, 권율은 「유연전」을 지은 이항복의 장인이었다. 유연의 부인 이씨는 이원익과 이웃하여 살았고, 이원익은 이항복에게 「유연전」을 짓도록 권유하였다.

를 쓴 이항복의 태도를 비판하고 이언관이 지닌 집안 문서의 오류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17] 이항복과 긴밀한 관계였던 李德泂도 후서를 보고 난 뒤 이지의 신문 과정에 관한 내용이 자신이 들은 것과 차이가 있다며 이항복에게 의문을 제기하는 편지를 보냈다.[18] 당대인들은 「유연전」을 창작으로 보기보다는 이지를 옹호하는 기록에 비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지의 아들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다. 이언관의 동생 이언용 역시 후서와 집안 문서를 가지고 權得己를 찾았다. 권득기와 이언용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권득기의 부인이 종친인 龜城君 李曛의 딸이란 점을 고려할 수 있다. 귀성군의 아버지 德陽君은 이복형제인 명종과 우애가 깊었으며, 달성령 이지는 명종의 총애를 받은 인연이 있었던 것이다. 권득기는 이언용의 제의를 받아들여 1608년에서 1609년 사이에 「李生訟冤錄」을 저술하였다.[19] 그는 이지의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없고, 가짜 유유를 통해 얻을 이익도 없다며 이지를 주범으로 보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다.[20]

「이생송원록」에서는 이지가 아닌 채응규를 사건의 주범으로 간주하였고, 유연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춘수와 백씨의 무고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 경우 이지는 누명을 쓰고 죽은 억울한 희생자가 된다. 이지 아들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대는 물론 후대까지 사람들은 「유연전」의 내용을 더 신뢰하였다. 李時發, 李瀷, 禹夏永 등 이 사건을 언급한 많은 이들은 「유연전」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이지를 범죄를 저지른 악인으로 여겼던 것이다.[21]

하지만 「이생송원록」의 내용 역시 완전한 창작물은 아니다. 전체 구도가 이지의 입장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서술되었지만 「유연전」에 언급되지 않은 다양한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다. 소설이라는 관점보다는 서로 다른 입장에 서 있던 두 집안과 작자의 주관이 사실과 뒤얽혀 있는 것으로 보고 두 기록

17) 金時讓, 『涪溪記聞』, 大東野乘.
18) 李德泂, 「與李子常書」, 『漢陰先生文稿』 권10.
19) 송하준, 「관련 기록을 통해 본 「유연전」의 입전의도와 그 수용태도」, 『한국문학논총』 제29집, 한국문학회, 2001.
20) 權得己, 「附與慶上舍述古書」, 『晩悔集』 권4.
21) 李時發, 「謾記」, 『碧梧遺稿』 권7; 李瀷, 「人事門」, 『星湖僿說』 권12; 禹夏永, 「柳淵傳後序」, 『千一錄』 권9 雜錄.

을 비교하면 이 사건의 실체에 좀 더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때로는 허구적 요소로 보일만 한 내용이 다른 자료에서는 사실로 기술되는 일도 있다.

채응규가 대구 감옥에서 결혼 첫날밤 백씨 부인이 월경 중이라 부부 관계를 하지 못했다고 증언하고 백씨가 이를 확인해준 대목도 그 한 예이다. 이는 채응규를 진짜로 믿게 만들고 유연을 난처하게 한 매우 중요한 증언이었다. 「이생송원록」에 나오는 이 내용은 『명종실록』에서도 언급되어 있다.[22]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면 채응규와 백씨와의 관계를 의심해 볼 수 있지만 관련 자료가 없다. 다만 16세기 영남 인사들의 기록 가운데에는 채응규가 이런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던 통로를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있다.[23]

유연 사건의 실상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유연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처럼 다양한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默齋日記』와 같이 유예원과 이문건, 이문건과 유연의 교류를 직접 기록한 내용도 있고, 유연의 또 다른 매형 河沆의 이지에 대한 평가도 남아 있다.[24] 사건의 발단이 된 상속에 관한 내용은 이 집안의 분재기가 없으므로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다른 분재기를 참고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주로 상속과 재판의 문제에 주목하였다.

3. 가계 계승과 상속 갈등

유연 사건을 다룬 기존 연구들의 대표적인 오류는 16세기 시대상을 이해하지 못한 점과 관련이 있다. 국문학계 일부에서는 이 시기에 종법 질서가 정착하여 제사 권한이 적장자에게 집중되고 상속도 적장자 우대로 바뀌었다고 본다.[25] 이에 따라 유예원 사후에 가출한 유유 대신 재산 대부분과 가문

22) 『明宗實錄』 권30 명종 19년 3월 20일(임술).
23) 權應仁의 『松溪漫錄』이나 高尙顔의 『泰村集』에는 채응규가 떠돌다 유유와 같이 지낸 적이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사실이라면 채응규는 이 과정에서 유유에 관한 많은 정보를 얻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24) 河沆, 「行錄略」, 『覺齋集』. 하항은 동서 이지가 재앙을 가져올 불길한 인물로 여겨 교류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25) 김진영, 앞의 글.

내 권한은 유연에게 넘어간다거나 유연이 재산을 독차지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26] 그 직접적인 근거는 『명종실록』이나 「유연전」에서 유연이 재산을 마음대로 차지하려 했다고 언급한 구절에서 찾는 듯하다.

『명종실록』에서는 유연이 '奪嫡' 즉, 적장자의 자리를 빼앗아 재산을 차지하려 했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당시의 관행이 적장자의 재산 전유를 허용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27] 유연이 처형된 1564년과 가까운 1570년 金斗年의 分給文記를 보면 그의 오남매가 각각 노비 11-12명, 논 28-30마지기, 밭 31-40마지기를 상속받아 균분의 틀이 유지되었다.[28] 다만 제사조로 기와집 1채와 노비 2명, 논 15마지기를 별도로 책정해 두었다.

1592년 부모 사후 和會를 통해 재산을 나눈 李涵 오남매의 사례도 유사하다. 질적 차이로 인해 양적 균형을 맞추기 쉽지 않았던 토지를 제외하면 노비는 14명씩 나누는 등 대체로 균분을 지향하였다. 다만 이 집안에서도 가계를 계승한 차남 이함에게 봉사조 몫으로 2명의 노비를 별도로 주었다.[29] 이는 적장자에게 오분의 일을 더 상속하도록 한 『경국대전』의 규정과 대체로 일치한다. 그런데 이함은 1579년에 죽은 형을 대신해 승중조로 5명의 노비를 비롯하여 토지와 기와집 등을 이미 별급 받았다.[30]

16세기 후반은 이들 사례에서 보듯이 균분 상속의 관행이 유지되는 가운데 별급이나 봉사조가 늘어나 가계 계승자의 몫이 커질 수 있었다. 이 시기를 지나 17세기 후반 이후로는 딸에 대한 차별과 적장자 우대 상속이 본격화하였다. 16세기에 장남이 재산을 마음대로 차지하는 관행은 없었으며 만

---

26) 박성태, 「「유연전」에 나타난 가정 갈등 양상연구」, 『인문과학』 제37집, 성균관대 인문과학연구소, 2006; 신해진, 「「柳淵傳」의 惡人 형상과 그 행방」, 『어문연구』 제54집, 어문연구학회, 2007.

27) 조선 전기의 상속에 대해서는 文叔子,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가족』, 경인문화사, 2004, 41-178면에 잘 정리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몇 가지 사례를 덧보태어 서술하도록 한다.

2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金斗年分給文記(1570)」, 『고문서집성 32—경주 경주손씨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a.

2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李涵同腹和會文記(1592)」, 『고문서집성 33—영해 재령이씨편(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b; 「李涵男妹和會文記(1619)」, 같은 책. 1619년에는 1592년 분재에서 빠진 것을 다시 나누었다. 이 문서의 분재 내용은 文叔子, 앞의 책, 199면을 참고할 수 있으며, 일부 수치는 보정하였다.

3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李光榮別給文記(1579)」, 앞의 책, 1997b.

일 그런 일이 일어나면 다른 자녀들에게 소송을 당할 수 있었다. 유연이 재산을 독점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유연의 육남매 역시 상속에서 각자의 몫을 차지할 수 있었다. 문제는 아버지 유예원이 죽기 전 상속을 하고 가계 계승자를 결정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이함은 차남으로서 가계를 이어나갔다. 장남인 형에게는 두 명의 딸만 있었는데 양자를 들여서 가계를 계승시키지는 않았다. 16세기까지 장남으로 가계가 이어지고, 장남에게 아들이 없으면 양자를 들이는 조선 후기적 관념의 종법 질서는 정착되지 않았던 것이다.[31]

유예원도 장남 유치가 딸만 하나 둔 채 먼저 죽었으나 가계를 이을 양자를 들이지 않았다. 그는 가출한 유유 대신 유연을 가계 계승자로 확정하지도 않은 것 같다. 유연이 가계 계승자로 지목되었다면 탈적의 혐의를 받을 일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예원이 사전 상속을 했는지는 이 집안의 분재기가 남아 있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 「이생송원록」에는 유예원이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각자의 몫을 나누어 주고 상속 문서까지 만들었다는 구절이 나온다.

이것이 사실인지 혹은 이지가 처가 재산을 탐낼 이유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거짓으로 만든 말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사실이라면 당시의 관행에 따라 균분 상속을 하면서도 가계 계승자를 우대하는 방식을 택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다만 유유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 계승자를 확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유예원이 사전 상속을 하지 않았다면 그가 죽은 1561년 이후 자녀들이 삼년상을 치르고 재산을 나누게 된다. 시기상으로는 이러한 방식으로 재산 상속이 이루어질 무렵에 유연의 옥사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사전 상속이든 사후 상속이든 유연 남매는 모두 각자의 몫을 확보할 수 있다. 딸만 남기고 먼저 죽은 이함의 형은 그의 부인이 대신 상속에 참여하였다. 그녀가 받은 상속 재산은 이후 두 딸에게 다시 상속될 것이다. 유예원의 죽은 장남 유치의 몫도 그의 딸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 딸은 후일 칠곡

31) 상속과 종법에 대해서는 권내현, 「17-19세기 조선의 재산 상속 관행—종법과 경제력 변동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제70호, 고려사학회, 2018 참고.

출신으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켰던 鄭汝康과 결혼하였다. 유예원의 아들과 마찬가지로 딸들 역시 상속에 참여하게 되며, 죽은 맏딸 몫은 사위 이지를 거쳐 외손자에게 전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지가 채응규를 내세워 욕심을 낼만 한 재산은 유유에게 돌아가게 될 몫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유유가 가계 계승자가 된다면 그 양은 더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서 변수는 가짜 유유인 채응규를 부인 백씨가 받아들여야만 계획이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그런데 백씨는 대구 감옥에 갇혔던 채응규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채응규가 사라진 뒤 시동생 유연을 남편을 죽인 죄인으로 고발하였다. 마치 이지의 계획에 동조한 듯이 행동한 것이다.

하지만 이지나 춘수의 공초에서 백씨가 공모한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 「이생송원록」에는 당시 영남인들이 채응규와 백씨가 사통했을 것으로 의심하는 대목이 있지만 이 역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었다.[32] 백씨는 실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도 백씨가 유연을 곤경에 빠트린 것은 두 사람이 가계 계승과 상속을 둘러싸고 갈등 관계에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미 기존 연구에서 일부 언급한 冢婦權과 兄亡弟及의 문제가 그것이다.

『경국대전』에서는 적장자에게 아들이 없으면 衆子가 제사를 받들 수 있도록 하였다.[33] 이러한 형망제급의 규정을 적용하면 아들이 없이 죽은 유치와 아들 없이 가출하여 생사를 알 수 없는 유유를 대신하여 유연이 가계 계승자가 될 수 있었다. 이는 남편 사후에 맏며느리가 총부로서 제사를 주관하고 가계 계승자를 지목할 수 있었던 관습과 충돌하였다. 원래 총부는 장남 치의 부인이었지만 그녀도 유유의 가출 이후 사망하였다.[34] 장남 부부가 아들 없이 죽었을 경우 차남의 아내가 총부가 되었으므로[35] 이 집안의 총부는 백씨가 된다.

---

32) 「이생송원록」에는 채응규가 유유 부부의 첫날밤과 같은 은밀한 이야기를 알고 있고, 백씨는 채응규의 진위를 적극적으로 판별하지 않은 채 도리어 유연을 무고한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채응규와 백씨의 사통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인데, 이지에게 혐의가 없음을 역설하기 위해 언급한 내용으로 보인다.

33) 『經國大典』 禮典 奉祀. "若嫡長子無後, 則衆子, 衆子無後, 則妾子奉祀. 嫡長子只有妾子, 願以弟之子爲後者聽, 欲自與妾子別爲一支, 則亦聽. 良妾子無後, 則賤妾子承重. 凡妾子承重者, 祭其母於私室, 止其身."

34) 李文楗, 『默齋日記』 8책 嘉靖 36년(1557) 7월 23일.

35) 『中宗實錄』 권41 중종 15년 12월 22일(병오).

백씨와 유연은 각각 관습과 제도를 내세워 집안 운영의 주도권을 두고 갈등을 빚을 수 있었는데, 이는 상속과도 연관이 있었다. 제사를 주관하는 이는 奉祀조 등의 재산을 별도로 상속받고 家廟가 있는 집도 소유하게 된다. 유연이 가계 계승자가 되면 남편과 자식이 없는 백씨는 거주 공간마저 상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이함은 형 대신 가계 계승자가 되어 집을 상속받았다. 반면 그의 형수는 총부가 아니어서 살 집이 없게 되자 이함이 거처할 곳을 마련해 주었다.[36]

이함의 사례와는 달리 "아들이 없는 형의 아내가 하루아침에 내침을 당하여 들판에서 울부짖고, 아우는 형의 죽음과 아들 없음을 다행으로 여겨 형의 집을 빼앗고 형의 아내를 내치고서 희희낙락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37] 총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맏며느리가 매우 난처한 상황에 빠지기도 했던 것이다. 16세기에는 이처럼 총부권과 형망제급을 두고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났다.[38]

이상적으로는 죽은 장자의 처와 차자 부부가 함께 살면서 제사에 공동 참여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16세기 당대 관료들은 이 또한 쉽지 않다고 보았다. 중국은 가옥 구조가 대가족을 수용할 수 있지만 조선은 형제도 같이 거주하기 어려운, 즉 소가족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노비들도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편이 갈려 싸우기 쉬운 현실에서 형제가 같이 사는 것은 어렵다고 인식했다.[39]

유연이 아직 가계 계승자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차 백씨를 어떻게 대우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다만 백씨의 행적으로 볼 때 유연과 평소 갈등이 있었으며, 유연이 가계 계승자가 되는 상황을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녀는 물론 친정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한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식이 없었으므로 이후 그 재산은 다시 친정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컸다.

---

3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李涵遺言(1627)」, 앞의 책, 1997b.
37) 『明宗實錄』 권17 명종 9년 9월 27일(을축).
38) 16세기 총부권에 관한 논란은 李舜九, 「朝鮮中期 冢婦權과 立後의 강화」, 『고문서연구』 제9·10호, 한국고문서학회, 1996; 박경, 「16세기 유교적 친족질서 정착 과정에서의 冢婦權 논의」, 『조선시대사학보』 제59집, 조선시대사학회, 2011 참고.
39) 『明宗實錄』 권17 명종 9년 9월 27일(을축).

1549년 權懿는 팔남매에게 상속을 하면서 자식을 얻지 못한 자녀는 그 재산을 타인에게 넘기지 말고 本孫 가운데 효도하는 이에게 물려주라고 하였다.[40] 1580년 高雲의 처 성씨 역시 오남매에게 재산을 상속하면서 자식을 두지 못한 자녀는 상속 재산을 본손에게 돌려주라고 하였다.[41] 이는 孫外餘他의 금지, 즉 상속받은 재산을 본손이 아닌 다른 이에게 넘기지 말라는 상속의 일반적인 원칙과 부합한다.[42]

백씨의 아버지는 무인 白巨鰍로, 중종대 여진인들이 만포진 첨절제사였던 沈思遜을 기습하여 죽일 때 즉시 구원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을 받았던 인물이다.[43] 백거추는 무예가 뛰어났지만 이 사건으로 더 출세하지는 못하였다. 그에게는 서자와 딸 둘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유유의 부인이었다. 백거추의 서자는 경상도 예천에서 수십 명이 작당하여 민가와 수령을 괴롭히고 다닐 때 그 무리의 일원이었다.[44] 백씨는 남편의 가출은 물론 이 일로 친정마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있었다. 만일 그녀가 친정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하거나 그 양이 적다면 생계에도 압박을 받을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남편 유유가 그의 부모에게 받은 재산의 소유나 처분권은 남편에게 있었다. 이때 남편이 죽고 자식이 없다면 남편의 재산은 장차 시동생 유연이나 조카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상속과 가계 계승을 둘러싸고 유연과 갈등 상황에 빠질 백씨에게는 남편 유유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안전판이 될 수 있었다. 그녀가 가짜 유유인 채응규가 나타났을 때 진위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그 때문이었다.

백씨는 나아가 채응규가 사라진 뒤 그와 춘수의 아들인 정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그녀는 채응규를 유유로 간주하였으므로, 정백은 유유와 백씨의 서자가 된다. 백씨는 아직 立後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예원 가의 관례

40) 「權懿子女八男妹分財記」(1549), 국학진흥원 소장.
4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高雲妻成氏衿給文記(1580)」, 『고문서집성 65—경주 옥산 여주이씨 독락당 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
42) 孫外餘他의 금지에 대해서는 文叔子, 앞의 책을 비롯해 상속을 다룬 많은 연구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43) 『中宗實錄』 권61 중종 23년 4월 15일(병진).
44) 『明宗實錄』 권23 명종 12년 11월 24일(계유).

에 따라 남편의 조카를 양자로 들이지 않았다. 물론 입후의 우선 고려 대상이 갈등 관계에 있던 유연의 아들이었다는 점도 문제였다. 다만 유연의 아들에 대해서는 족보의 기록에 혼란이 있어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렵다.[45]

백씨의 입장에서 정백은 돌아온 남편이 다시 사라진 뒤 얻은 새로운 안전판과 같았다. 그렇다면 정백은 유예원과 유유의 제사를 받들고 가계를 계승할 권리가 있었을까? 법적으로 서자의 제사 승계는 인정되었다. 하지만 16세기 현실에서 그 권리는 제약을 받고 있었다.[46] 적장자에게 아들이 없으면 중자가 제사를 받든다는 『경국대전』의 규정은 적용을 둘러싼 논란 끝에 적장자에게 적자가 없는 경우로 한정되기도 하였다.[47] 백씨가 정백을 유유의 서자로 인정하더라도 유연이 살아 있는 한 가계 계승을 둘러싼 갈등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씨는 유연을 모함하여 죽음에 이르게 했으며 적자인 조카를 입양하는 대신 정백을 데려왔다. 이를 통해 그녀는 자신의 입지를 넓히는 한편으로 남편 집안의 상속에서도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게 되었다.

이 집안의 상속과 관련하여 논란이 된 또 다른 인물은 沈鏜이었다. 유유의 막내 고모는 朴琯이란 인물과 결혼하였는데,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심륭의 부인이었다. 「유연전」에는 이지가 처남 유연이 상속받은 별급에 평소 불만을 드러내는 등 처가의 재산에 관심이 많았다는 내용이 나온다. 부부 사이에 자식이 없었던 심륭도 처가의 재산 향배에 관심이 있었다. 결혼한 여성이 자식 없이 죽으면 그녀의 재산 소유를 두고 조선 전기에는 분쟁이 종종 발생하였다.[48]

법전에 따르면 부인이 자식 없이 일찍 죽은 상황에서 남성이 재혼하여 자식을 얻으면, 전처의 재산은 새로 얻은 자식과 전처의 친정이 1:4의 비율로 나누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새로 얻은 자식, 즉 전처 입장에서 義子女가 前

45) 족보를 보면 유연에게는 仁이라는 한 명의 아들이 존재한다. 족보에서는 유연의 아들을 思湖로 기재하였다가 이후 그를 유연의 사촌인 유황의 아들로 정정하고 그 자리에 인을 수록하였다.
46) 정긍식, 「16세기 첩자의 제사 승계권」, 『사회와 역사』 통권 53집, 한국사회사학회, 1998.
47) 김윤정, 「朝鮮中期 祭祀承繼와 兄亡弟及의 변화」, 『조선시대사학보』 제20집, 조선시대사학회, 2002, 113면.
48) 문숙자, 「朝鮮前期 無子女亡妻財産의 相續을 둘러싼 訴訟事例」, 『고문서연구』 제5호, 고문서학회, 1994; 「義子女와 本族간의 財産相續分爭—1584년 鶴峯 金誠一의 羅州牧判例 분석—」, 『고문서연구』 제8호, 고문서학회, 1996.

母의 제사를 맡으면 그 비율은 4:4로 조정되었다.[49] 하지만 심륭이 재혼한 흔적은 없다. 이 경우 심륭 부인의 재산은 그녀의 친정에서 환수하거나 상속 대상을 결정할 가능성이 컸다.

유희춘 집안의 사례를 보자. 유희춘의 아들 유경렴에게는 이남 일녀가 있었는데, 딸은 결혼 뒤 자식이 없었고 남편도 먼저 죽었다. 1602년 유경렴은 딸에게 상속한 재산 일부를 미리 장손에게 별급하여 향후 딸의 제사 비용에 쓰도록 하였다. 아울러 남은 재산은 딸이 죽은 뒤 여러 자손이 논의해서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게 하였다.[50] 유경렴의 딸은 친정에서 상속받은 재산을 다시 친정 조카에게 상속하되 자신의 제사를 지낼 이에게 더 많은 양이 돌아가도록 하였던 것이다.

심륭의 장모 유씨는 딸에게 재산을 상속하면서 만일 자식이 없으면 그 재산을 오빠인 유예원의 아들에게 전하도록 하였다. 유예원의 장남은 죽고 차남은 가출하였으므로, 심륭의 부인이 죽으면 그녀의 재산은 결국 유연에게 상속될 가능성이 컸다. 물론 그때 유연은 고종사촌 누이인 심륭의 처에 대한 제사를 책임져야 한다. 이 때문에 심륭은 유연에게 우호적이지는 않았으나 그가 범죄에 직접 가담한 혐의는 없었다.

족보를 보면 적장자였으나 자식이 없었던 심륭의 가계는 양자를 통해 이어졌다. 양자의 존재는 재산의 향배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유연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아직 심륭이 양자를 들이기 전이었다. 심륭이 처가에서 상속받은 재산을 향후 자신과 자신의 양자를 통해 이어지기를 바랐다면 유연이란 존재에 평소 관심을 기울일 만했다. 이 재산은 이후 심륭의 양자와 유연의 아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있었지만 더 이상의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4. 정치 세력 변동과 재판

상속 갈등은 유연 사건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16세

49) 『經國大典』 刑典 私賤. "無子女前母繼母奴婢, 義子女, 五分之一. 承重子, 則加三分."
50) 「柳景濂別給文記」(1602), 담양 모현관 소장.

기에는 총부권과 형망제급을 두고 갈등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총부들이 입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점차 해결되어 나갔다. 적장자에게 적자가 없으면 동생에게 가계 계승권을 넘기는 방식 대신 양자를 통해 가계를 이어 나갔던 것이다. 17세기 이후 이처럼 입후가 확산하면서 적장자로 계승되는 종법 질서도 보편적으로 수용되어 나갔다.

유연 사건을 이해하는 또 다른 요소는 16세기 정치 세력의 변동 문제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연 처형 당시 삼성추국의 위관을 맡았던 심통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당시 우의정으로 영의정 윤원형과 함께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훈척이었다. 윤원형은 명종의 어머니인 문정왕후의 동생이었고 심통원은 명종비 인순왕후의 종조부였다. 위관 심통원의 판단은 유연의 강상죄 여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유연 사건을 처음 맡은 대구 부사 朴應川은 유연에게 우호적이었다. 그는 대구에 부임하기 전 봉산 군수로 있을 때 임꺽정 집단에 맞서 활약하였으며,[51] 대구에서도 많은 치적을 남겨 읍지에 名宦으로 기록되었다.[52] 그는 유예원이 그러했던 것처럼 성주에 유배와 있던 이문건과도 교류하였다.[53] 명종대 훈척이 권력을 전횡했던 시기에 사화로 피해를 본 관료들이 여러 곳에 유배되었고, 지방관이나 재지 사족 중에는 그들과 교류했던 인물이 많았던 것이다.

심통원과 유연 사건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상반된 기록이 있다. 「유연전」에는 심통원이 대구 부사 박응천에게 편지를 보내 사건에 개입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는 이지와 심통원이 연결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에 「이생송원록」에서는 이지와 심통원의 집이 가까이 있지만 평소 교류가 없었다고 반박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 두 기록 외에 이지와 심통원의 직접적인 교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다만 두 사람의 연결 고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지는 명종과 특별한 관계로 을사사화에서는 衛社原從功臣으로 책봉되었고, 심통원은 명종의 척신이었다.

---

51) 朴東亮, 「歷朝舊聞」, 『寄齋雜記』, 大東野乘.
52) 『輿地圖書』 慶尙道 大丘 名宦.
53) 李文楗, 『默齋日記』 9책 嘉靖 40년(1561) 7월 26일.

또한, 이지의 고조부는 세종이었으며 심통원의 고조부는 세종의 장인 심온이었다. 이러한 인연으로 두 사람이 평소 교분을 나누었을 가능성은 있다. 직접적인 교분이 없더라도 이지보다는 유연에게 불리한 처분을 내릴 수는 있었다.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시 주목되는 인물은 심륭이다. 심륭은 이지와 함께 가짜 유유인 채응규가 나타났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진짜임을 확신한 인물이었다. 심륭과 이지는 상속과 관련하여 처가의 재산에 관심이 있었다. 심륭은 심통원과 함께 모두 심온의 후손이었다. 정확하게는 심륭의 아버지 沈義儉과 심통원이 팔촌 간으로 가까운 친척이었다. 이지는 직접 심통원과 통하거나 혹은 심륭을 거쳐 심통원에게 자신의 이해를 관철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채응규가 대구 감옥에 있을 때 그를 대부분 가짜라고 여겼으나 유유로 확신한 인물 중에 徐時雄이란 이가 있었다. 그는 1555년(명종 10) 진사시에 합격한 뒤 성주목의 교수가 되어 향교의 학생들을 가르쳤다. 목 이상의 지방에는 대과인 문과에 급제한 관원이, 도호부에는 생원이나 진사 출신이 교수로 임명되었다. 이문건은 법에 저촉되는 서시웅의 교수 임명이 영의정의 청탁 편지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았다.[54] 서시웅은 중앙의 권력자와 연결되어 있던 것인데, 당시 영의정 沈連源은 바로 심통원의 친형이었다.

서시웅은 과거 유유와 함께 지었던 글을 채응규가 알고 있자 그를 유유로 믿었다고 하였다.[55] 서시웅과는 달리 진사 徐泂은 채응규를 가짜로 확신하였다.[56] 이후 심통원이 유연을 강상죄로 처형하면서 서시웅은 사심이 없는 사람으로 평가받았고, 서형은 정반대의 인물로 지탄을 받았다. 서시웅이 사심 없이 채응규를 유유로 지목했는지 알 수는 없다. 그런데 채응규를 진짜로 본 인물들은 대부분 특정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지와 심륭이 그랬고 춘수나 백씨도 마찬가지였다. 서시웅은 유연 집안의 상속과는 관련이 없었으나 이지나 심륭과 연결되었을 가능성은 있었다.

주로 유연과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인물들이 채응규를 유유로 인정하였고,

54) 李文楗, 『默齋日記』 7책 嘉靖 36년(1557) 1월 4일.
55) 高尙顔, 「叢話」, 『泰村集』 권4 效顰雜記上.
56) 대구 사람 서형은 『司馬榜目』을 보면 1558년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나 『明宗實錄』에는 생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실록의 오기로 보인다.

그 가운데 일부는 유연이 유유를 죽였다는 주장까지 하였다. 유연에 대한 최종 판결 이전에 심통원이 이들 가운데 누군가와 연결되었을 수 있지만 「유연전」을 제외하면 직접적인 근거는 없다. 설령 심통원이 이지 등과 사전 교감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강상죄로 삼성추국을 받게 된 유연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었다.

정치적 사건이나 강상죄로 인한 추국은 보통 유죄 추정의 방식으로 신문이 이루어졌다. 신문 과정에서 고문이 동반되었고, 증거 없이 진술에 의존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컸다. 유연은 자신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했으나 이마저도 위관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었다. 유연의 유유 살해는 탈적이란 배경에 대한 추론만 존재했지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다. 목격자도 범행 방식도 시체도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오로지 신문과 고문에 의한 진술만이 살해의 근거가 되었다.

유연의 처형과 관련하여 『명종실록』에는 사관 두 명의 논평이 실려 있다.[57] 그들이 공통으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은 우선 범죄의 배경을 탈적을 통한 재산의 전유로 본다는 점이다. 이는 적장자로의 가계 계승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16세기에 장자의 유고가 형망제급으로 이어질 수 있던 상황과 연관이 있었다. 탈적을 재산의 문제로 인식했던 당대인들의 시각을 통해 가계 계승자에 대한 상속 상의 우대가 확대되고 있었던 시대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강상죄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은 제도적으로 강상죄를 엄격하게 다루어 삼성추국을 통해 실상을 파악하였고 처벌 또한 가혹하였다. 강상죄에 민감한 분위기는 유연 사건과 같이 오히려 판결에 허점을 드러내게 할 수도 있었다. 채응규의 진위에 대한 주변 인사들의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강상죄를 범했다는 유연의 혐의는 다른 모든 가능성을 일축해 버렸다. 한 사관은 대구 부사 박응천과 채응규를 가짜로 판단한 서형마저 비난하였다.

반면 한 사관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체도

57) 『明宗實錄』 권30 명종 19년 3월 20일(임술).

찾지 못한 상황에서 고문에 의한 자백으로 판결을 내렸다고 조심스럽게 비판하였다. 이는 위관 심통원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이었다. 강상죄의 무게감 때문에 유연을 비난하면서도 판결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분위기는 당시에도 있었던 것이다. 유연의 처형과 관련하여 위관 심통원을 직접 힐난한 것은 「유연전」이었지만 『명종실록』에서도 심통원에 대한 수많은 평가는 모두 부정 일색이었다.

심통원에 대한 사관들의 일관된 평가는 외척이란 배경으로 재상의 지위에 올랐으며 매관매직과 뇌물에 의한 옥사 처리와 같은 부당한 방식으로 막대한 재산을 모았다는 것이었다. 그는 윤원형, 이량과 함께 三窟로 불리며 사림에 큰 피해를 준 인물로도 인식되었다.[58] 따라서 당시 사림들은 그가 어떤 물의를 일으킬지 항상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형편이었다.[59] 특히 중종이 승하할 때 왕위 계승과 관련한 遺命을 심통원이 받들었다면 후일 사림에게 큰 화가 일어났을 것으로 판단하기도 하였다.[60]

이러한 내용은 심통원이 윤원형과 함께 사림의 공적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윤원형은 누이 문정왕후의 죽음 이후 빗발치는 탄핵을 받고 지방으로 쫓겨났다가 1565년(명종 20) 죽음을 맞았다.[61] 심통원 역시 1567년 선조 즉위와 함께 이이 등의 탄핵을 받아 관직을 삭탈 당하고 지방으로 쫓겨났다.[62] 선조의 즉위로 사림이 중앙 정계의 전면에 등장하면서 심통원은 더는 권력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것이다.

사림의 정계 장악은 유연 사건에도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탄핵당한 훈척 심통원이 지휘한 재판, 종친 이지가 관련된 재판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더구나 유연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재판의 증거도 충분하지 않았다. 「유연전」을 보면 유연의 추국에 참여한 관원으로 심통원 외에 洪暹, 奇大恒과 洪仁慶의 이름이 보인다. 『명종실록』의 관직 임명 기록을 기준으로 할 때 홍섬은 당시 대제학, 기대항은 이조참판이었고,[63] 홍인경은 신문 기록을 담

58) 『明宗實錄』 권27 명종 16년 8월 6일(계해).
59) 『明宗實錄』 권33 명종 21년 12월 30일(병진).
60) 『明宗實錄』 권34 명종 22년 6월 28일(신해).
61) 『明宗實錄』 권31 명종 20년 11월 18일(신해).
62) 『宣祖修正實錄』 권1 선조 즉위년 9월 1일(임자).

당한 問事郎廳이었다. 기대항은 가혹한 고문에, 홍섬과 홍인경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음에 불만을 품었지만 심통원의 위세에 눌려 사건을 그대로 처리하였다.

기대항은 권신 이량과 가까워 비난을 받았으나 이후 이량의 축출에 공을 세워 사림들이 화를 피했다는 이유로 칭송을 받기도 하였다.[64] 그는 유연이 처형당한 해에 사망하여 이 일을 더는 공론화할 기회가 없었다. 홍인경도 1568년(선조 1) 부친상을 당해 관직을 그만두었으므로[65] 유연 사건을 재론하기 어려웠다. 이량을 탄핵하고 사직한 전력이 있었던 홍섬은 후일 이 문제를 언급하였다. 결국 추국에 참여했던 인물들이 이미 심통원의 판결에 불만을 느끼고 있었고, 이는 다른 관료들에게로 퍼져나갔다.

유연 사건에 대한 재조사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인물은 鄭淹이었다.[66] 정엄은 유연 처형 당시 사간원 정언이어서 이 사건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광주 출신의 사림으로 기대승, 고경명, 유희춘 등과 친분이 있었는데,[67] 유연과의 개인적인 연결 고리는 확인되지 않는다.[68] 1571년(선조 4) 사헌부 장령이었던 정엄은 유연 사건에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69]

정엄은 유연의 죽음을 지난날 훈척 대신들에 의해 자행된 잘못된 재판의 하나로 판단했거나 적어도 증거가 불충분한 미심쩍은 사건으로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 정엄의 문제 제기에 당시 추국에 참여했던 홍섬도 동조하였다. 하지만 선조는 그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 유연의 죽음은 정치적 사건이 아닌 강상죄로 처벌받은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건의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도 않았고 당시 위관이었던 심통원은 이미 관직이 삭탈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조의 거부로 정엄의 재

63) 『明宗實錄』 권29 명종 18년 11월 12일(정해); 권29 명종 18년 12월 12일(병진).
64) 『明宗實錄』 권30 명종 19년 7월 13일(계축).
65) 『宣祖修正實錄』 권2 선조 1년 5월 1일(경술).
66) 柳重教, 「通政大夫承政院同副承旨贈嘉善大夫司憲府大司憲鄭公墓誌銘並序」, 『省齋集』 권41 柯下散筆.
67) 金平默, 「楊村鄭公墓碣銘」, 『重菴集』 권46 墓碣銘.
68) 족보에는 유연이 서울에서 정엄과 교류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으나 당대의 기록에서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69) 『宣祖實錄』 권5 선조 4년 10월 27일(병진).

조사 요구는 현실적인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유의 시체가 발견된 것은 아니어서 조정에서는 유유가 아직 살아 있다고 말하는 이들이 간혹 있었다. 정엄 이후로도 관료들 가운데에는 심통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여기는 이들이 있었고 재조사의 필요성을 말한 이들도 더러 있었지만 증거가 없었다.[70]

유연의 재판은 당대인들에게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었으며, 사림의 전면적인 등장으로 이 사건은 얼마든지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올 수 있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새로운 단서나 증거의 출현이었다. 그 단서는 홍문관 수찬 尹先覺(尹國馨)에 의해 제공되었다. 그는 유연이 처형되기 전인 1560년(명종 15) 유유를 만난 적이 있었다.[71] 윤선각은 그때 장인을 따라 평안도 순안의 한 산사에서 독서를 하며 머물렀는데, 天裕勇이라는 인물과 같이 지냈다. 천유용은 학식이 있어 아이들을 가르치며 먹고 살았고 영남의 지리와 양반 사족들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많았다.

윤선각도 영남 의성 출신이었으므로 천유용에게 호기심이 갔지만 천유용은 자신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그는 순안을 떠난 뒤 고향 사람들에게 천유용에게 관한 일을 말하자 유유일 것이라며 놀라는 사람들이 있었다. 실제 유유는 가출 이후 오랫동안 평안도 지역에 머무르고 있었다. 고향 대구에서 워낙 멀리 떨어진 곳이었으므로 그에 관한 소식이 전해질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윤선각은 1564년(명종 19) 평안도 개천에서 천유용의 글을 받은 얼마 뒤 유연이 유유를 살해하고 처형되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소식을 들었다. 천유용이 유유라면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었으므로 윤선각은 평소 이 사건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윤선각은 1568년에 과거에 급제하여 1564년 유연의 처형 당시 관료는 아니었다. 그는 1571년 정엄의 문제 제기 당시에도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

다만 윤선각은 평안도 사람들을 만날 일이 있으면 천유용의 안부를 물었

70) 『宣祖實錄』 권14 선조 13년 윤4월 10일(무신).

71) 尹國馨, 『聞韶漫錄』. 『宣祖實錄』에는 정엄이 1570년에서 1571년 사이 유유를 순안에서 목격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는 그가 저술한 『문소만록』과 「유연전」의 1560년과는 차이가 있다. 직접 만난 것이 두 차례인지, 실록의 기록이 오류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으며, 그가 여전히 살아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윤선각이 이 일을 공론화할 기회를 얻은 것은 홍문관 수찬으로 있던 1579년(선조 12) 겨울 경연 석상에서였다. 그는 선조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유유의 생존 가능성, 즉 유연 재판의 오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는 유연 사건의 재조사에 필요한 새로운 단서가 확보되었음을 의미한다.

선조는 윤선각의 요청을 받아들여 천유용이 유유임을 확인하고 이지와 춘수를 처벌하였다. 유연의 죽음이 재론될 수 있었던 것은 사림의 권력 장악과 심통원의 실각 때문에 가능했다. 일부 사림 인사들은 유연의 죽음에 오랫동안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고, 몇 차례 조정에서 공론화를 시도하였다. 마침내 유유를 직접 목격한 윤선각에 의해 재조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결국 심통원이 주관한 추국은 정당성을 잃게 되었다.

이지와 채응규의 관계가 두 사람의 입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두 번째 재판에서는 이지를 주모자로 보았다. 왕실의 일원이자 명종과 친분이 깊어 공신으로 대우받았던 이지는 죽음을 맞았다. 선조의 즉위와 사림의 권력 장악으로 그를 비호해 줄 사람도 더는 없었다. 더구나 유연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의 죽음에 관련된 인물들이 자결하거나 혐의를 인정한 이상 이지를 비호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다.

5. 맺음말

국문학계에서 송사소설로 규정하고 있는 「유연전」의 내용 가운데 사실과 허구를 구분하기는 어렵다. 등장인물은 모두 실존했던 이들이고, 사건의 기본적인 흐름 역시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실상 확인이 어려운 흥미로운 내용 역시 이항복의 의도적인 창작인지, 참고한 자료나 전언을 그대로 옮긴 것인지는 파악할 수가 없다. 역사학의 관점에서 이보다 중요한 것은 유연 사건의 역사적 배경이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 사건과 조금이라도 연관된 인물, 그리고 이 사건을 언급한 다양한 자료의 분석은 유연 사건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균분 상속의

틀을 크게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가계 계승자의 몫을 늘리고 있었던 16세기의 상속 관행은 적장자 우대 상속으로 가는 과정이었다. 당시에는 적장자로 가계가 이어지는 종법이 현실에서 완전하게 정착하지 않아 형제간 상속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실제로 장자 유치 부부가 죽은 이후 입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유유의 부인 백씨와 유연 사이에서 총부권과 형망제급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였다. 가계 계승이 예상되던 유유가 부자간, 부부 간 갈등으로 가출한 것은 비일상적인 일이었으며, 종법 질서가 삶을 규정했던 조선 후기의 관념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채응규의 진위를 적극적으로 가리지 않고 시동생 유연을 모함한 백씨의 행위는 후일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다만 그녀의 과도해 보이는 대응은 당대 총부의 불안한 입지와도 연관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종류의 가족 갈등은 입후가 확산하면서 자연스럽게 해소되었다.

유연 사건은 한편으로 16세기 사림의 정계 장악이란 정치적 변동과 함께 재조명될 기회를 얻었다. 명종대 외척으로 사림의 공적이었던 윤원형과 심통원은 차례로 탄핵을 받아 쫓겨났다. 유연을 처형한 위관 심통원의 처분에 의구심을 가진 사림 관료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가운데 유유의 생존이 확인되면서 사건의 실상이 밝혀지게 되었다. 명종의 비호를 받았던 종친 이지는 선조의 즉위와 사림의 전면적인 등장으로 보호막이 사라진 가운데 죽음을 맞았다.

유연 사건은 가족 갈등이나 개인의 욕망이 극대화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당대의 상속 관행으로 인해 파생된 갈등을 이해할 수 있는 사례가 된다. 한편으로 유연의 죽음에서 이지의 죽음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정치 세력의 변동이 이 사건에 미친 영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유연 사건과 관련 기록은 16세기 상속과 재판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覺齋集』, 『經國大典』, 『寄齋雜記』, 『晩悔集』, 『默齋日記』, 『聞韶漫錄』, 『白沙集』, 『碧梧遺稿』, 『涪溪記聞』, 『司馬榜目』, 『省齋集』, 『星湖僿說』, 『松溪漫錄』, 『輿地圖書』, 『朝鮮王朝實錄』, 『重菴集』, 『千一錄』, 『泰村集』, 『漢陰先生文稿』.

「權儀子女八男妹分財記」(1549), 국학진흥원 소장.
「柳景濂別給文記」(1602), 담양 모현관 소장.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문서집성 32—경주 경주손씨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a.
_____, 『고문서집성 33—영해 재령이씨편(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b.
_____, 『고문서집성 65—경주 옥산 여주이씨 독락당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

권내현, 「17-19세기 조선의 재산 상속 관행—종법과 경제력 변동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제70호, 고려사학회, 2018, 283-315면.
김영연, 「「이생송원록」을 통해 본 「유연전」과 유연 옥사 담론」, 『국문학연구』 제38호, 국문학회, 2018, 205-232면.
김윤정, 「朝鮮中期 祭祀承繼와 兄亡弟及의 변화」, 『조선시대사학보』 제20집, 조선시대사학회, 2002, 107-130면.
김진영, 「「유연전」에 나타난 조선 중기의 사회변화와 지향의식」, 『어문연구』 제84집, 어문연구학회, 2015, 49-85면.
노꽃분이, 「「柳淵傳」의 구성적 특징과 서술의식」, 『한국고전연구』 제1집, 한국고전연구학회, 1995, 345-371면.
문숙자, 「朝鮮前期 無子女亡妻財産의 相續을 둘러싼 訴訟事例」, 『고문서연구』 제5집, 고문서학회, 1994, 39-60면.
_____, 「義子女와 本族간의 財産相續分爭—1584년 鶴峯 金誠一의 羅州牧判例 분석—」, 『고문서연구』 제8호, 고문서학회, 1996, 41-68면.
_____,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가족』, 경인문화사, 2004.
박 경, 「16세기 유교적 친족질서 정착 과정에서의 冢婦權 논의」, 『조선시대사학보』 제59집, 조선시대사학회, 2011, 71-104면.
박성태, 「「유연전」에 나타난 가정 갈등 양상연구」, 『인문과학』 제37집, 성균관대 인문과학연구소, 2006, 101-124면.
백지민, 「17세기 전계소설의 창작 동인과 서사전략—「유연전」과 「강로전」을 대상으로」, 『한국고전연구』 제34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6, 85-114면.
송하준, 「관련 기록을 통해 본 「유연전」의 입전의도와 그 수용태도」, 『한국문학논총』 제29집, 한국문학회, 2001, 75-101면.
신해진, 「「柳淵傳」의 惡人 형상과 그 행방」, 『어문연구』 제54집, 어문연구학회, 2007, 243-274면.
이수봉, 「유연전 연구」, 『호서문화연구』 제3집,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1983, 139-168면.
李舜九, 「朝鮮中期 冢婦權과 立後의 강화」, 『고문서연구』 제9·10호, 한국고문서학회, 1996, 253

-276면.
정긍식, 「16세기 첩자의 제사 승계권」, 『사회와 역사』 통권 53집, 한국사회사학회, 1998, 153-184면.
_____, 「〈柳淵傳〉에 나타난 相續과 그 葛藤」, 『법사학연구』 제21호, 한국법사학회, 2000a, 83-100면.
_____, 「〈柳淵傳〉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16세기 형사절차의 일례—」, 『又凡李壽成先生華甲紀念論文集』, 동논문집간행위원회, 2000b, 341-352면.
_____, 「16세기 財産相續과 祭祀承繼의 실태」, 『고문서연구』 제24호, 한국고문서학회, 2004, 1-44면.
정수환, 「16세기 영해 무안박씨의 매매와 분재를 통한 가계경영 전략」, 『인문학연구』 제27집, 제주대 인문과학연구소, 2019, 135-170면.
정인혁, 「「유연전」의 시점과 플롯 연구」, 『어문연구』 제30권 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2, 143-158면.
정충권, 「「유연전」과 「화산중봉기」 비교 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제11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6, 388-408면.
조도현, 「「柳淵傳」의 文學的 特性과 그 意味」, 『인문학연구』 제34권 1호,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07, 223-239면.
한효정, 「16세기 한 양반가 부인의 재산축적과 소유의식—慶州孫氏家門 和順崔氏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제36호, 한국고문서학회, 2010, 97-120면.

【Abstract】

Yuyeon Case in the 16th Century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Kwon, Nae-Hyun*

Inheritance in Joseon society in the 16th century maintained the practice of equalized inheritance among children. At the same time, it was a process of gradually increasing the share of family successors. Equalized inheritance contributed to the expansion of financial capacity through marriage. As such, among upper class men, there were many who were interested in the property of their wife. At this time, clan rules were not yet fully settled, and if the eldest son died without children, there was a conflict over the inheritance and family succession between the eldest son's wife and the second son. The Yuyeon case shows an interesting illustration of the inheritance practices and conflicts at that time. In addition, this case reveal facts that were hidden by the changed political reality of the emergence of the Neo-Confucian literati. By gathering relevant data and tracking the interrelationships between characters in connection with political and social realities at that time, the meaning of this case can be grasped objectively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Keywords: Yuyeon (柳淵), Inheritance, The eldest son, Clan rules, Relative of a queen, Neo-Confucian literati (士林).

접수일: 2020.06.29. || 심사일: 2020.07.09. || 게재확정일: 2020.08.17.

* Professor, Dept. of History Education, Korea Univ.